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. 3. 7 선고 2018가단212 판결 [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2. 28.

판결 선고 2018. 3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1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원고는 2015. 12. 18.경 피고와 거제시 C건물,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0,000,000원, 임대차기간을 2016. 1. 15.부터 2018.

1. 15.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

110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윤준석